

속 기록

- 회 의 명 : 제384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4. 11. 29(금) 15:30~18:19
- 장 소 : 나주 본관, 아르코미술관 3층 회의실, 온라인 줌
- 출석위원 : 정병국 위 원 장 (인)
구문모 위 원 (인)
김미라 위 원 (인)
김진각 위 원 (인)
배은주 위 원 (인)
서승미 위 원 (인)
성기숙 위 원 (인)
이훈경 위 원 (인)
왕치선 위 원 (인)
장미진 위 원 (인)
정갑영 위 원 (인)
홍성태 위 원 (인)

1. 성원 보고

정병국 위원장 : 제384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사정상 저는 지금 나주에 있고 서울 아르코미술관에서 직접 참석하신 분들도 있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위원님들도 계신데요. 좀 색다른 방법으로 회의를 합니다만, 함께 잘 진행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참고로 오늘 나주에서는 빛가람초등학교 지원사업 ‘예술 더하기’ 행사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학교가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고 학부모님들이 상당수 오셨고 다른 학교의 학부모, 교장선생님들이 오셔서 벤치마킹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주시장이나 교육장 등도 다 흡족해 하셨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것인가?” 라는 논의까지 이루어졌고요. 또 나주시에서는 빛가람초등학교를 모델로 운영하는 것을 보고 혁신도시에 있는 다른 3개 학교까지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지원까지도 하기로 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셔서 보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있네요. 그러면 사무처장님은 인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위원 12인 중에서 12인 모두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회 선언

정병국 위원장 : 예.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 결과

정병국 위원장 : 송시경 사무처장은 전차 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전차 회의 결과는 회의자료 3페이지에 있습니다. 10월 25일 개최한 제383차 전체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상정되어 수정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4. 의결 사항

정병국 위원장 : 지금부터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번호 제1082호 기관 중장기 전략체계 수립(안)입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서 소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로 경영전략소위원회에서는 기관 중장기 전략체계와 문예기금 안정화 대책 마련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 결과로 11월 1일에 기금안정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서 오늘은 기관 중장기 전략체계(아르코 비전 2030) 수립(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9년 수립된 현재 중장기 전략 비전체계는 당시 환경을 반영해서 예술가와 창작지원 중심의 기관전략을 수립했다면 이번 중장기 전략체계에서는 현 정부와 8기 위원회 출범 이후 기관이 맞이하고 있는 대외환경, 내부 여건을 고려하는 한편, 우리 기관의 설립목적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예술가와 함께 만든 창조의 기쁨을 모든 국민들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가치있는 삶을 어떻게 누리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경영전략소위원회에서, 특히 김진각 위원님께서 퀄리티 매니저로서 전략수립에 깊이 참여해 주셨고요. 기획조정팀 김태희 과장이 프로젝트매니저로 본 과업을 담당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안전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4월부터 시작해서 중장기 전략체계 수립 과업은 지금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환경 분석과 내·외부 의견수렴을 거쳐서 오늘 전략 도출까지 나왔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맡기지 않고 위원님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하나하나 만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지만 조금 더 현실적인 내용들이 담겼다고 보고요. 그 내용은 저희 프로젝트매니저로 참여한 김태희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기획조정팀 과장 : 그동안 전체회의에서 경영전략소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그간의 진행결과를 보고드렸기에 오늘 더더욱한 내용까지 보고를 드리기 보다는 기존의 경영전략과 새로운 전략의 핵심적인 변경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자료 9쪽 하단 가치체계 변경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의 비전2030과 핵심가치 변경사항을 기존과 비교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먼저 비전의 경우 2019년에 설정한 기존 비전선언문은 “창조의 기쁨을 함께 만드는 예술 현장의 파트너”로 정책대상과 기관의 역할을 예술계 중심으로만 제시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전에서는 국민지향성을 강조하는 비전으로 개편하고자 하였고요. 이를 반영하여 “문화예술과 국민을 잇고, 문화예술의 내일을 함께하는 아르코”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국민을 연결하는 국민지향성을 반영하였고 “문화예술의 내일을 함께 하는 아르코”에서 예술지원기관인 기관의 고유역할과 예술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비전선언문이 확정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 비전의 경우 기관의 전략방향을 가장 함축적이고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자 대외에서 가장 먼저 인식하는 내용이므로 13쪽에 있는 비전 후보(안)을 잠시 후에 살펴보시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핵심가치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핵심가치들도 아르코 구성원의 행동 증거로서 모두 필요한 내용이고 좋은 가치들이지만 환경변화와 내·외부 의견,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4가지 핵심가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정성입니다.

정부 국정가치가 공정과 상식인 점을 고려하여 반영하였고, 특히 공모를 통한 보조금 지원사업이 많은 우리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유관기관의 증가, 급변하는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문화예술지원 대표기관으로서 차별화된 역할을 위해 전문성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예술장르, 사회구성원, 표현방식, 소통방법, 추구하는 가치 등의 다양화, 다원화되고 있는 환경과 문화예술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여러 이해관계자와 소통해야 하는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지속가능성입니다.

ESG경영의 중요성과 더불어 지속가능성이 현재 국가와 예술계를 비롯하여 초국가적 담론인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계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 하는 기관의 역할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전략체계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체계의 구조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전략체계는 전략목표, 전략과제 그리고 세부과제 단위까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기관의 구조를 조금 더 다층적으로 보여주는 이점도 있었지만 여러 단계에 걸쳐서 파악해야 되었기 때문에 전략을 쉽게 이해하고 관리하는데 다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략에서는 전략목표와 그에 따른 전략과제 단위까지 2단계 층위로 개선하여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2단계 층위로 전략을 구조화하는 것이 훨씬 일반적인 구조이기도 합니다. 다만, 2단계 층위로 구분하되 기관의 전략을 더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전략목표를 기존 3개에서 4개로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전략과제는 기존 전략의 세부과제 기준 12개에서 총 14개 전략과제로 확대 구성하였습니다.

아래 표의 전략목표와 그에 따른 전략과제를 기존체계와 비교해 보았는데요. 크게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변경 사유와 개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전략목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3개였습니다.

첫째로 창작 파트에 해당하는 지속가능한 창작환경조성, 둘째로 향유 파트와 가치확산 파트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의 가치공유, 마지막으로 기관경영에 해당하는 기관 운영체계 혁신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의 전략도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지만 한계도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내용을 새로운 전략목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문화예술의 창의성 발현입니다.

창작 파트인데요. 해당 파트의 기존 전략은 예술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단계까지만 다루었던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새로운 전략에서는 기관비전이 국민 지향성을 담은 내용으로 개편됨을 반영하고 현재 지원기관 간 역할 재정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현재 지원기관 간 역할 재정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수한 창작활동과 창작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강조하였고 특히 창작의 성과를 국민이 더 체감하고 국제 등 대외적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과제를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문화예술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창의성이 더욱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문화예술의 매력 국민 전달입니다.

향유 파트인데요. 우선 워딩은 ‘문화 매력국가’ 라는 정부의 문화비전 용어를 활용하였고, 국민에게 더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담았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기존의 향유 전략이 취약계층 중심으로만 구성되었던 한계에서 나아가 취약계층을 비롯하여 일반 국민까지 문화예술의 향유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문화층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잠재 관객, 미래 관객을 개발하고 창출한다는 과제를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가치확산 파트인 문화예술 가치 공감과 지지입니다.

기존 전략의 전략목표를 보시면 가치확산에 해당하는 목표가 별도로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전략의 두 번째 전략목표에 향유 파트와 가치확산 파트가 병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치확산이 기관의 주요 사업영역이자 앞으로 확대 가능성이 높은 영역임을 고려하여 새로운 전략에서는 전략목표 3번으로 별도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개선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예술가치 확산의 개념을 후원 중심으로 인식하였는데요. 이를 예술의 효용성과 기여를 알리는 활동과 이에 대한 성과로서 후원인식을 제고하는 활동으로 구분하고 이를 각각 전략과제화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략목표는 기관경영 파트에 해당하는 선진형 예술위원회 경영 모델 확립입니다.

기존 전략의 내용도 모두 필요한 내용들이었지만 새로운 전략에서는 예술위원회의 위상과 특성을 좀 더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대표 공공기관이자 합의제 위원회 구조에 선진적 경영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역할과 내용들을 전략과제에 반영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존 전략에서 달라진 핵심적인 내용들이고요. 11쪽부터는 새로운 비전전략 체계와 해설입니다. 디테일한 내용들이라서 괜찮으시면 이 부분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마무리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하단에 보면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중장기전략만 놓고 보면 오늘 의결이 된 이후에는 외부에 공표를 하고 우리 기관 홈페이지 등에서도 변경사항을 표시하고요. 한편으로 사무처에서는 내재화 활동 등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략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 의결해 주시는 내용에 따라서 사무처에서는 본 전략을 반영해서 2025년 본부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예산안부터 반영이 될 중기사업계획 예산에서도 이 내용들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3페이지에 저희가 다루었던 신규 비전 후보안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관의 의지를 표명하는 문구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더 많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내용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지금 보고를 받으신 대로 그동안 김진각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4월부터 오랫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고 전문가 그룹들과 자문도 받아서 오늘 보고를 드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결과 보고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태 위원 : 새로 만드신 “문화예술과 국민을 잇고 문화예술의 내일을 함께 하는 아르코”는 너무 멋지거든요. 그런데 혹시 영어로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외국에도 널리 알리려면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아직 영어로 만드는 것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게 확정되면 저희 홈페이지는 국문과 영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략 내용들은 영어로 번역해서 해외의 이해관계자들에게도 보여지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홍성태 위원 : 있을 건 다 있는데 더 쉽게 와닿으려면 영어로 표현했을 때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저도 한 말씀을 드리면, 신규 비전 후보들을 쭉 보면 ‘문화예술과 국민을 잇고 문화예술의 내일을 함께 하는 아르코’ 그런데 이렇게 쭉 읽히는 게 어려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후보를 보면 1번에 ‘문화예술과 국민을 연결하여 삶의 가치를 높이는 아르코’ 라든지 또는 쉽게 ‘최고의 문화예술로 국민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이렇게 하는 건 어떨지? 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논의할 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갑영 위원 : 소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은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이런 안을 내서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결하고’, ‘잇고’ 이런 수식

어가 붙는 것보다 간결하게 함축성 있는 워딩으로 내용을 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게 어떤 것이 타당할지는 10개의 예시를 보시고 의견을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기존의 안을 약간 수정하여 의견을 주셔도 좋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아마 우리 팀에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저는 정갑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문화예술로 국민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이런 문구가 함축적이면서 쉽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하는 의견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정갑영 위원 : 이 내용은 사실 메일로 위원님들께 먼저 자료를 드렸거든요. 며칠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신 내용을 보내주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해서 내용을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오늘 의결을 해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로드맵하고 홍보하는 절차가 있는 모양인데요. 그러면 오늘 의결하지 않고 연기하자는 의견이신가요?

정갑영 위원 :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있으면 몇 분 더 얘기를 해 보죠.

김진각 위원 : 그때 경영전략소위원회에서 논의했던 게 1번과 2번도 많이 논의를 했는데요. ‘삶의 가치를 높인다.’와 ‘최고의 문화예술’이라는 게 개념 자체가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비전의 지향점이 지원하고 그 지원의 성과가 국민한테 연결된다는 부분이라고 하면 문화예술과 국민을 이어보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해서 나온 게 오늘 제시된 비전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쪽으로 가자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삶의 가치’, ‘최고의 문화예술’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도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비전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수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이 없으신가요? 장미진 위원님 말씀하시죠. 장미진 위원님 마이크가 안 나와요.

(장미진 위원 음향 점검)

정병국 위원장 : 장미진 위원님은 의견을 메시지로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왕치선 위원 : 예. 만드신 분들의 노고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외람된 것 같습니다만, 저희 기관에서 내용들을 제시했을 때 누구에게 제시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술위원회 직원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 부처에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고객이라고 하는 예술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준비한 내용들은 대단히 접근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굉장히 경직되고 예술기관이 아니라 정부 부처의 슬로건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가능하다면 저희가 이것을 근간으로 하되 대상그룹에 따라서 워딩을 순화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가 저로서는 조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외부로 나가는 것은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고 내부적으로는 경영평가나 내부에서 하는 평가 그리고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외부로 나가는

문체부 요구 자료나 국회로 나가는 업무 설명 등 다채롭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공동으로 나가는 내용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답이 아니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술인들과 국민을 상대로, 우리의 정책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술인들과 국민들에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국회로 가거나 정부로 가는 것은 당연히,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국민과 예술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일하느냐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니까 이것은 그쪽을 지향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것은 국민과 문화 예술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분들에게 아르코가 어떤 목표와 가치·철학을 가지고 일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셨을 때 왕치선 위원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시는 것은 분명하다고 봐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는 분명한 것이고요. 예술인들이나 국민을 상대로 했을 때 그동안 노력해서 올라온 내용에서 어떤 부분들을 바꿨으면 좋겠다거나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왕치선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아이디어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우리의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예술인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우리의 비전과 내용을 봤을 때 이해하기 좋고 접근하기가 좋은 식으로 워딩이라든가, 접근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전반적인 워딩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들을 꼭꼭 짚기보다 전체를 봤을 때 지극히 관료적이고 딱딱한 것들이라서 요즘같이 ‘접근성’, ‘전달’ 등을 강조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조금 소프트 코팅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국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예술가들을 위한 소프트 버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겠지만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예술가들이 쉽게 보고 공감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용 등은 제가 노력하신 분들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배은주 위원 : 그러면 저도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비전 및 핵심가치를 나타내는 저희의 비전선언문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가지의 후보군을 조합해서 하신 것도 굉장히 많은 고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다른 것들로 다시 워딩과 슬로건을 만드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1번부터 10번까지 후보군 중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을 설명하는 듯한 문구를 먼저 후보군에서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취합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도하는 기관이나 아르코. 그렇게 하면 4번이나 5번을 제외하면 몇 가지 남지 않거든요. 그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의 문화예술로 국민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라는 것에 예술적인 표현을 조금 더 가미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예술가들이 결국 국민이고 또 예술가들만이 아르코에 함께 하는 수혜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국민들이 함께 예술을 누려야 되겠죠. 그렇다면 ‘문화예술로 국민 모두를 풍요롭게’ 라는 문장에서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배은주 위원님 말씀은 지금 비전에 한정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왕치선 위원님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왕치선 위원 :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쓸 적에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만약 예술가들이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이것을 볼 때는, 제가 쉽게 얘기를 하자면 전략목표라고 해서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 조성’ 이렇게 자르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부드럽게 소프트 워딩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할게요.” 라는 것을 붙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쓰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아는데요. 우리의 대상자들이 공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이런 식의 것들에 익숙하지 않은 예술가들이라는 것을 좀 감

안하자는 거죠.

정병국 위원장 : 예. 이런 의견에 대해서 우리 경영전략소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김진각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구문모 위원 : 제가 코멘트해도 되겠습니까?

정병국 위원장 : 예. 구문모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구문모 위원 : 이번 자료에 대해 팀장님이 쪽 얘기하신 것들은 많은 게 제가 언급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적은 비교적 쉬운데 그것을 개선하는 말. 개선하는 말은 워딩이 사실상 우리 직원이나 위원들이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최고의 문화예술’ 이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것은 ‘최고’ 라는 게 잘못하면 일반인들에게는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언급했는데요.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제가 설명했었는데요. 소위 말해서 카피하는 건데요. 글쟁이들이 달리 글쟁이겠어요. 제가 죄송한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전문가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적하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대안을 얘기하기에는 우리 위원들이나 직원들이나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야 하는 건 경영평가를 받을 때 분명히 지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넘어가면 좋은데 문제는 상대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이 분야의 워딩 전문가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이쪽 분야의 전문가니까 몇 가지 대안을 갖고 선택하면서 그것을 통과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태 위원 : 저도 구 위원님 말씀에 하나 첨언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들이 ‘국민과 잇는다.’, ‘연결한다.’ 라는 것과 ‘내일의 가치’, ‘풍요롭게’ 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영어로 해 보면 어떨겠느냐?” 라고 한 것이 영어로 하면 우리의 생각이 좀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10번의 영국예술위원회를 보면 ‘Great Art Culture for Everyone’ 이런 건 참 쉬우면서 상당히 사람들에게 와닿잖아요. 그것이 우리말로 제일 가까운 게 2번이 맞는데요. 조금 전에 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을 한다면 당연히 디자이너한테 맡기는 걸로 생각하지만 글을 쓴다고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걸 예쁘게 만들려면 카피라이터한테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를 찾아내고 그것을 갖다가 단순하게 만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 계신가요?

정갑영 위원 : 지금 여기에서 워딩에 대한 논의를 하면 한이 없고요. 그것을 위해서 미리 메일로 전해 드렸어요. “의견이 있으시면 미리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비전 자체에 대한 워딩 논의를 하게 되면 금방 결론이 나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해진 시간 내에 이것을 못 합니다. 더구나 이 얘기는 예술인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경영평가를 위한 전문가들 용어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들한테 다가오느냐 안 다가오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괜찮으시다면 제 생각으로는 정해진 시간 내에, 10분이나 15분 내에 워딩을 대충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을 토대로 간결하게 가다듬는 작업은 맡겨 주시는 거죠. 우리 팀에 맡겨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하는 것을 전제로 이것을 의결해 주시면 향후 진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워딩 자체를 갖고 논의를 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장미진 위원님 연결이 되나요?

장미진 위원 : 들리시나요?

정병국 위원장 : 예, 잘 들립니다.

장미진 위원 : 한 가지 여쭙보면 의견수렴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의견수렴하신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저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다 반영하실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첫 번째 창의성 발현에서 (4)번 창작 성과의 확산 부분은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하더라고요. (2)번으로 넘어가도 큰 차이도 안 보이고요. 그래서 의견수렴도 중요하지만 잘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병국 위원장 :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장미진 위원님께서 무기명으로 의견을 주셔서 이게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인지는 알지를 못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아마 의견으로 주신 게 “기관 설립목적이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한다는 미션에 적합한 전략인지 모르겠다.” 라고 의견을 주신 게 위원님께서 주신 게 맞을까요? 이번에 의견수렴을 했을 때 위원님들 중에서는 한 분이 의견을 주셨거든요.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한다.” 라는 게 창조의 기쁨이 창작지원으로 전략목표 (1)번에서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한다.” 라는 건 저희 전략목표 (2)번, (3)번에 해당한다고 생각했고요. 이게 어쨌든 미션을 반영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배치는 그렇게 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것에 대해서 장미진 위원님 답이 되셨나요?

장미진 위원 : 일단 다른 분들은 의견을 안 주셨어요?

정병국 위원장 : 다른 분은 의견이 없었고 장미진 위원님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기명으로 주셔서 어느 분인지 몰라서 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장미진 위원 : 다른 분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논의하는 자리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병국 위원장 :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죠?

임주연 본부장 : 오늘 의결을 해야 여기에 맞춰서 중기사업계획 등을 진행하는데요.

정병국 위원장 :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최대한 해야 하느냐고요.

임주연 본부장 : 12월 중순까지는 해야 됩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게 실상으로 전달했을 때는 의견이 없다가 한두 분이 의견을 주기 시작하면 생각이 나서 의견을 주시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 그냥 자료만 가지고는 쉽게 어떤 취지로 어떻게 돼서 이게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안 듣고는 의견을 내기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논의를 하니깐 각자 위원님들께서 생각나고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의견을 주시게 되었는데요. 이게 일단 포문을 열었으니깐 이렇게 하시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좀 더 보시고요. 이걸 12월 중순까지는 끝내야 된다고 합니다. 의견을 주시고 저희가 이게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경영전략소

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최종안을 만들고 서면의결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다른 의견을 주실 분이 계신가요? 우리 정갑영 위원님 그렇게 하면 어떠세요?

정갑영 위원 : 지금 시간상 만약 12월 중순까지 끝내야 된다면 오늘이 29일이니까 늦어도 12월 첫째 주
금요일까지는 해야죠.

정병국 위원장 : 5일까지는 의견을 주시고요. 5일까지 의견을 주시고 5일까지 의견이 없으면 없는 것으
로 알고요. 그렇게 하고 그것을 취합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될까요?

정갑영 위원 : 그런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요.

정병국 위원장 : 그렇게 해서 10일까지 이것을 정리해서 올리고 10일 날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서면의
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성기숙 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정병국 위원장 : 예, 말씀하세요.

성기숙 위원 : 저는 경영전략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대면회의와 줌 회의에 100% 참여를
했었고요. 김승수 의원실 국회 기금관련 안정화 주제로 한 세미나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사실 여러 의견
을 말씀드렸지만 소위원회 자체의 회의 진행도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이지 않고 불안하게 가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영전략소위원회에서 주최한 국회 세미나에서도 사실상 패널로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문화예
술위원회의 미래 비전과 관련된 발전지향적인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서면의결 등 기계
적인 것보다는 경영전략소위원회 내에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고요. 또 경영전략소위원회의 소위원회장님을 비롯해서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적으로 회의에 임해서 비전전략을 세우는 이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고요. 위원님들이 더 의견 있으시면 의견을 5일
까지 주시고 취합된 의견들을 모아서 경영전략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10일까지 최종안을 만들고 여
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견이 없으면 서면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안전 제1082호 기관 중장기 전략체계 수립(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 의견을 받아서 12월 5일까지 추가적으로 의견을 주시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10일까지 경영전략소위
원회에서 최종안을 만들어 주시고 그 최종적인 안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없으면 서면의결로 표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안전번호 제1083호 비상임위원 전담심의 참여사업에 대한 위원회 의결 참여 여부 결정
입니다. 이어서 김성범 기획조정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23페이지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상임위원의 전담심의 참여에 대한 위원회 의결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본 안전을 보고드리고자

하고요. 관련하여 참여 혹은 제척을 각각 1안과 2안으로 두고 어떤 안을 결정할지에 따라서 위원회 운영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서 저희 팀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경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임위원 전담심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서 세부 논의를 위해서 TF가 구성되었습니다. 총 2회에 걸친 TF 회의에서 전담심의위원 구성 방식, 심의위원 후보단 총원 규모 등이 결정되었지만 비상임위원의 심의 참여사업에, 그 심의 결과에 대한 전체 의결 참여 여부는 합의되지 않았고, 이후 위원회 전체회의 그리고 장관 주재 위원회 간담회 때 일부 논의가 되면서 추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결론이 나와 다음 회차인 12월 전체회의에서 심의결과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질 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의결안건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2)번 결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릴 내용을 쉽게 2가지로 나눠서 보면 심의 참여사업 심의결과에 대한 심의·의결에 대해서 참여할 것인지 제척할 것인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의 3에는 위원의 의무와 제척·기피·회피가 규정되어 있고 만약 해당 안건의 심의 후에 의결까지 그대로 참여하신다면 현 규정에서 변경이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제척하는 것으로 결정하신다면 해당 규정상 제3호로 “위원이 해당 안건 또는 지원사업의 심의 및 심사 등에 관여했을 경우” 라는 조문을 신설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 내용들은 현재와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본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간략히 정리해 봤습니다.

1안은 해당 안건 심의·의결 참여하는 것에 대한 주요 의견으로 “심의에 참여한 비상임위원이 전체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있어서 해당 위원에게는 책임 소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의결에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비장르 위원들이 의결할 경우 장르별 전문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전체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권은 위원 고유 권한이므로 참여가 필요하다.” 또 “장르위원의 대표성 확립을 위해 심의, 의결 모두 참여가 필요하다.” 라는 의견이 심의·의결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2안으로 해당 안건 심의·의결에 제척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은 “심의위원 후보자 추천부터 심의, 의결, 모니터링, 평가까지 모두 관여하는 것은 비상임위원의 과도한 권력 집중 및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질 수 있다.” 라는 의견, “비상임위원의 심의 참여 의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외부 시각에서는 심의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도를 저하하는 요인으로 보여질 수 있다.” 라는 의견, “예술현장의 문제제기와 우려가 있다면 이를 고려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절차상 보완을 위한 장치라고 한다면 심의에 참여한 장르 위원이 의결에서 제외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국내외 사례를 보더라도 비상임위원이 심의 추천, 심의, 의결까지 모두 참여한 사례는 부재하다.” 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본 사항에 대해서 사무처에서도 참고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검토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심의위원 구성, 심의 참여, 심의결과 의결까지 전 과정에 위원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받은 것이구요. 우선 저촉될 관련 법령은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은 공직자이고 비상임위원의 법적 지위는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공직자인 비상임위원이 심의위원과 함께 심의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결까지 참여하는 것은 공정성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것만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법률검토 내용이었습니다.

공정성 문제 소지로 인해서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는 기관으로 영화진흥위원회 사례가 있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이미 기관 정관에 해당 안건 또는 지원사업의 논의·심의·심사 등에 관여하였을 때는 제척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배경에는 이미 영화계에 종사하고 있는 위원들이 심의 참여를 한 경우에 의결까지 한다면 이해충돌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제척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가 사무처에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일단 안건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그 방향에 맞춰서 규정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보고를 드린대로 본 안건 1083호 비상임위원 전담심의 참여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죄송하게도 30분 후에 나가서 줌으로 다시 참석해야 돼서 빨리 의견을 말씀드리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논의된 바 있었고 제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의결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같습니다. 그리고 사례로 밝혀 주신 것처럼 다른 타 기관에서도 공정성이나 절차성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그 우려를 충분히..... 저희도 현장에서 들어오고 다 들으셨을 텐데 굳이 그것까지 가야 하는가에 대한 개인적인 의문이 있어서 저는 역시 의견을 묻는다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바로 의결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세요? 이것은 오늘 어쩔 수 없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 표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모 위원 :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렵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의결을 원하시는 분은 아마 그럴 겁니다. 이의제기가 왔을 때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는 책임감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지금 권력 집중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회의할 때 말씀을 못 들려서 그렇기는 한데요. 위원들의 인원수와 외부위원들의 인원수를 보면 사실 권력 집중이 아니거든요. 다만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떤 걸 고민하느냐 하면, 그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이나 편향성을 아마 우려할 텐데요. 만일 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의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꾸 영화진흥위원회와 비교를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절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접근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들께서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투명성을 보장할 것인가에 집중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만일의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심사 결과에 대해 문제가 되었을 때 과연 누가 책임지고 설명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끊임없이 의심을 한다고 하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의심은 계속될 겁니다. 완벽한 제도가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언제든지 그런 시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크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반대하시는 분이냐 이것을 주장하시는 분이냐요.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의견이 없으신가요?

서승미 위원 :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견들은 이미 다 반영한 것이고 서로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달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어쩔 수 없이 오늘은, 만약 하나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표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미진 위원 : 죄송하지만 한 가지 여쭙봐도 될까요?

정병국 위원장 : 예, 말씀하세요.

장미진 위원 : 문화재위원회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심의도 하고 의결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그 쪽의 사례는 조사된 게 있을까요?

정병국 위원장 : 문화재위원회는 잘 모르겠는데요. 문화재위원회는 책임심의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장미진 위원 : 문화재위원들이 직접 심의를 하잖아요.

정병국 위원장 : 책임심의제가 아니라는 거죠.

서승미 위원 : 예를 들어서 문화재위원 같은 경우 심의하고 의결까지 할 수 있지만 심의하신 분이 추천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3가지가 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성기숙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문화재위원회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정병국 위원장 : 예, 말씀하세요.

성기숙 위원 : 제가 전담심의위원 참여에 대한 심의·의결권에 관해서는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나중에 제 의견을 말씀드릴 건데요. 문화재위원회 말씀이 나와서 이 건에 관련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15년 전부터 지자체 문화재위원, 국가유산청 그러니까 과거 문화재청 전문위원을 계속 하고 있고요. 30년부터 이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이 문화재위원회하고 전담심의위원회 참여 의결권하고 심의·의결은 사실은 동시에 가운데 점이 딱혀 있잖아요. 이것은 등식입니다.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지자체 등 국가유산청이든 심의 따로 의결 따로 가본 적이 없고요. 아까 거기에서는 심사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기구의 성격 자체가 다르고요. 문화재위원회는 보유자 후보랄까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것이지 이렇게 단발성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곳은 아닌데요. 그곳에도 역시 문화재위원회 의결·심의하는 전 단계로 조사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조사평가위원들은 위원들이 추천을 하고요. 그 위원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분들이 심의해 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의결을 같이 갑니다. 세트로 같이 갑니다. 이게 같이 안 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보장받지 못하고 완결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분들의 의견을 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저도 나름대로 법적 검토를 하고 개인적으로 자문도 받아보고 했거든요. 다른 의견을 주시면 제가 무용 분야 관련해서도 저는 전담심의에 참여하기로 한 위원 중에 한 명이 기 때문에 전담심의에 참여하지 않는 위원들이 생각하는 이 부분의 정서나 책임감, 중압감과는 좀 다른 차원일 것 같아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결국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과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는 건 성격이 다르다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다르다.’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심의·의결을 같이 한다는데 방점이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차이가 있다고 지금 성기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기숙 위원 : 아니요. 당연히 기구가 다르고 문화제는 하는 일이 다르죠. 그렇지만 저 이야기의 방점은 심의·의결이라는, 거기도 법적 기구입니다. 거기도 문화재위원들이 법령에 의해서 직무수행을 하는데 심의·의결, 특히 의결권. 심의와 의결은 같이 법령에 의해서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고유권한으로 작동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저는 후자를 지금 말씀드린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태 위원 : 저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책임소재라고 하는데 책임이라는 것이 뭐죠? 그러니까 전문성에 따른 책임감 말고 책임의 극단은 뭐가요? 형사상, 민사상의 책임을 말하는 건가요?

정병국 위원장 :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심의를 일회성으로 그냥 심의하는 걸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책임심의를 하자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담심의회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일단 심의하신 분이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홍성태 위원 : 그런데 책임을 진다는 게 무슨 말이죠?

정병국 위원장 : 책임을 진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은 심사한 결과물에 대해서까지도 점검을 해서 결과보고서까지 내겠다는 게 책임심의회고요. 그러니까 책임의 한계라는 건 우리가 책임심사제로 안 하더라도 책임의 범주가 달라지거나 하는 건 없어요. 다만, 결과까지도 점검해서 피드백까지 결과물을 내겠다는 게 책임심의회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성기숙 위원 : 홍성태 위원님이 오늘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반가운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책임심의회가 결국 문예위는 전담심의회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니까 저는 전담심의회라는 용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전담심의회, 책임심의회는 다 같은 말인데 책임을 지겠다는, 제가 무용의 위원으로서 참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존 경시공모에서는 단발성 그다음에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심의위원들이 600명의 풀에서 선정되어 일회성 심사. 심사를 하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전담심의회라는 것은 신청서류를 아주 세밀하게 검토하고요. 1차 서류심사. 2차에서는 1차에서 걸러진 단체 1.5배수나 많이 신청한 데는 5배수도 되겠죠. 그래서 2차 심의에서는 신청대표자들과 그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술적인, 미학적인 또 무대에서의 구현방식. 무용은 안무, 동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대면으로 해서 심층 인터뷰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 지원금이 결정되고요. 이 전담심의회위원들이 지원금의 단체 숫자와 액수까지 여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책임이 있느냐? 결과치가 나가겠죠. 그러면 탈락한 단체들은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담심의회를 한 분들이 책임을 지고 어떤 원칙, 어떤 근거로 어떤 명분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공감을 얻어내야 한다는 측면에 있고요. 또 심의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면, 중간 중간에 그 단체가 작품을 제작해 가는 가운데에서 중간평가와 모니터링 그리고 자문 역할까지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공연이 되면 그 작품이 미학적 가치 판단으로 우수한 작품이라고 하면 지방이나 문체부에서의 중요한 축제나 해외공연까지 연결시키는 역할까지 했을 때 전담심의회가 갖고 있는 근본 취지와 목적이 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 장단점은 있었겠지만 이번에 어차피 위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용 분야의 각오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심의도 해보지 않았는데 굉장히 공정성 문제가 회의 때마다 거론이 되기 때문에 이 심의에 참여하겠다는 위원들은 얼마나 많은 책임감과 중압감을 갖고 있는데 공동의 동행길을 가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하지 않는 위원님들로부터 이런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듣고 있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심리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무용 분야에서는 어떤 책임성을 강화하고 어떤 공정성을 기할 것이냐? 많은 고민 끝에 심의결과를 건 바이 건으로 모두 다 투명하게 점수를

공개할 것입니다. 전체 평균 점수가 아니고요. 모두 다 건 바이 건으로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명칭을 부여했는데요. ‘심사 점수 실명제’ 이것을 한번 실시해 보려고 했는데요. 우리 사무처의 공연예술팀에서는 “과히 혁명적이다.”, “이렇게 하면 정말 공정성과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였고요. 우리 전담심의위원들도 누리집에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심사 점수 실명제’로 모두 다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정말 치우침 없이 자기 이름을 걸고 공정하게 심사에 임하자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심자가를 가지고 가시밭길을 가는 것과 같은 심정이고요. 또 하나 다시 말하자면 시퍼런 칼날이 노려보고 있는 도마 위에 생선과 같은 책임감을 여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극협회나 우리 문예위 노조나 또는 문화연대, 언론취재. 이것은 제가 마무리를 할 때 말씀드릴 건데요. 그런 곳으로부터 주시 대상이 되고 비판과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원으로서 법령에 보장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저는 무용 분야 5년치 혹은 3년치, 그동안에 진행된 심사서류. 책임심의제를 비롯해서 무용 분야의 모든 심사서류와 심사결과서, 신청서, 정산결과 보고서까지 요청해서 지금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냐? 불공정 시비로 문제 제기가 되었을 때 저는 올해 단발성만 가지고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청단체들이 과거에 어떤 신청을 했고, 어떤 결 중복으로 받았는지를 수치화하고 지표화할 것입니다. 근거를 갖고 설명을 하기 위함인데요. 이런 노력에 대해서도 진정성과 중압감을 갖고 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꼭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언급하는 것들은 녹취록 혹은 기록에 남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 회의는 다 녹취가 되고 있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성기숙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그 대신 저희가 무용 분야의 모든 심의는 투명하게 건 바이 건으로 점수까지 다 공개하고요. 대신 신청단체들한테도 신청서 그다음에 결과보고서, 마무리 때 정산보고서도 함께 투명하게 공개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무용계와 사회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공정하게 심의가 되었는지, 심사결과서가 무대에 올려진 작품하고 어떻게 부합되는지. 특히 정산보고서의 정산 처리가 얼마나 투명하게,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그다음에 정착하게 되어 있는지 모두 다. 그러니까 저희는 권한을 주되 이렇게 철저하게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제도도 완벽하고 이게 옳다고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보다 더 일반적인 예술계나 국민들이 판단할 때 어떤 것이 더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했느냐? 그리고 또 예술계의 의사를 반영했느냐는 차원에서 좋은 제도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성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시고자 하는 의지는 다 인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런 저런 문제 제기들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우리가 일을 잘해 놓고도 이런 저런 소리를 들을 이유가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이 있다고 하면 그런 보완책을 만들어가 보자는 차원에서 그동안 논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느 위원님도 우리 위원회가 가고자 하는 길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이나 국민을 위해서 한다는 관점에서 똑같다고 봐요. 그런데 접근방법론의 차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서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느 게 ‘옳다.’, ‘그르다.’ 단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객관화 시켜서 한번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어느 게 ‘옳다.’, ‘그르다.’의 차원이 절대 아니라는 차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혹시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병국 위원장 : 예, 말씀하세요.

이훈경 위원 :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야기는 너무 오랫동안 저희가 진행해 왔고 각자의 입장은 이미 여러 번 얘기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분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책임을 갖고, 그만큼의 책임감과 무게감을 갖고 의견을 내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여하신 분이 책임감과 공정성, 무게감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무용 분야에서 점수를 공개하는 것들이 그렇게 무용 분야만 해도 되는 것인지? 이 또한 저희가 의논하고 정리를 해서 할 거면 다 같이 하던가, 아니면 무용 분야만 오픈을 하더라도 다른 위원님들 모두가 “OK. 무용 분야라도 오픈하자.” 라고 합의가 돼서 가야하는 것인지? 제가 사실 그게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분야에서는 “저기는 저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왜 안해?” 등의 이야기가 또 나올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 등은 위원회로 넘어올 테니까 이것 또한 저희가 논의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예민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처에 이게 가능한 것인지를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요. 사무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한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게 뒤죽박죽이 되면 진도를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질문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그 전에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말씀하시죠.

성기숙 위원 : 무용 분야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예술지원본부의 류재수 본부장님과 공연예술팀장님과 제가 이것을 공유했구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법률 자문을 받겠다는 것을 저한테 다시 공유했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없이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성기숙 위원 :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무용 분야를 자꾸 불공정을 저지를 것 같다는 추측과 상상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불편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기숙 위원 : 제 질문은 무용 분야에서 전담심의위원이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서 문화예술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는 건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연극협회에서는 저희한테 문건이 이메일로 전달돼서 알고 있거든요. 무용 분야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정병국 위원장 : 일단은 익명으로 들어온 건은 있고요. 익명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디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차원은 아니라고 보고요. 최소한 우리 위원회가 좀 주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익명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취급하지 않거든요.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가 안 되었는데 왜 회의 때마다 무용 분야가 불공정을 저지르는 것처럼 하시면 제가 심히 유감스럽고요. 이런 식의 회의는 절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분야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지 않고 익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위원장님께서 회의 때마다 무용 분야를 말씀하시는데 연극 분야는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병국 위원장 : 위원님, 제가 언제 무용 부분을 얘기했어요? 회의를 하면서요.

성기숙 위원 : 지금 무용 분야를 법적 검토를 하셨다는데요. 위원인 저한테.

정병국 위원장 : 무용 부분을 언제 법적 검토를 했다고 했어요? 제가 언제 무용 분야라고?

성기숙 위원 : 아까 법적 검토를 하셨다고, 송시경 사무처장님께서 설명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정병국 위원장 : 무용이라고 하는 ‘무’ 자도 제가 꺼낸 적이 없고요. 심사한 결과를 오픈했을 경우에 다른 법령에 저촉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했지 무용에 ‘무’ 자도 꺼내본 적이 없습니다.

성기숙 위원 : 그렇지만 전제가 무용 분야에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정병국 위원장 : 아니요. 그쪽에서 문제가 나왔으니까, 지금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의결해야 하니까,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하는 얘기죠.

성기숙 위원 : 제가 위원으로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병국 위원장 :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성기숙 위원님이 열정적으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새로운 부분을 시도하려는 부분을 저는 존경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해 주시면 그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저를 계속 그런 식으로 모독하지는 마세요.

성기숙 위원 :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제가 3개월 동안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병원에서 링거를 3번 맞았고요. 심장 엑스레이까지 찍었고요. 병원진단서를 가지고 저는 대응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편견은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위원님.

정병국 위원장 : 아니요, 그것은 됐어요. 지금 논의사항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때가 되면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전담심의회 비상임위원이 참여를 했을 경우에, 직접 참여를 해서 심사를 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심사결과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때에 비상임위원이 계속 참여를 해서 의결에 참여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제외하느냐에 대한 안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진 위원 : 의견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근 몇 개월간 갈등이 있었고요. 갈등이 해소가 안 되었고 결국 장르별로 그냥 개별적으로 가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장르별로 몇 분만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짐을 몰아드리면 안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의결권에서 빠져라.” 라고 말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냥 장르별로 가고요. 대응하는 것도 장르별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대국민 발표회는 “시범적으로 장르별로 하고 있다.” 라고 발표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모든 장르를 통합해서 해 보겠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합의제고요. 장르별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결국은 장르별로 해서 심사결과가 올라와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해당 장르의 위원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12인이 공동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도..... 누가 이것을 이렇게 지난하게 논의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체 12인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겁니다.

배은주 위원 :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저희가 전담심의제를 진행해본 결과 3개 장르만 책임심의위원이 들어가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다원예술 분야에서 심사를 어떻게 진행되는지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을 새로 추천하는 것인지 알았는데 참여해 보니까 660명. 기존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추천해 주신 그 풀에서 그리고 추가한 130명이 추가돼서 그중에서 저희가 2배수로 추천을 하고요. 저는 2개 분야만 전담심의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심의관 1명 그리고 저희들이 2배수로 추천한 심사위원들 4명 그래서 1+4의 구성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느꼈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구나.” 왜냐하면 기존 풀에서 저희가 추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제도가 그렇게 획기적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이 저는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전담심의위원으로 함께 참여해서 4명의 위원들과 심사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의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의결에 빠지던 의결에 함께하던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늘 모든 사업들이 올라오면 함께 의결을 했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전담심의제도에서 빠졌던 위원님들이 부담되지 심사의 결과를 모두 다 함께 책임지는 결과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저는 또 그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전담심에 참여하지 않았던 위원님들이 의결을 하시고 실제로 참여했던 위원님들은 의결에서 빠지는 부분에서 어떤 모순이 있는지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한 일을 다른 위원님들이 책임지는 결과가 되나?” 라는 게 저는 조금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지금 우리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해당 장르별, 사업별로 심사를 해서 올라온 건이 미투 문제나 그 사람의 전과 문제 또는 환수 문제에 대해서 결격사유를 추후에 알게 돼서 그것이 부결되는 건은 있었지만 심사결과에 대해서 “심사를 공정하게 안 했다.” 의 차원에서 재논의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해당 장르별로 심사한 것에 대해 존중해 주는 것이고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관여하지 않으려던 측면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결국 12명이 공동의 책임을 지고 의결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독임제가 아니고 합의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불공정 시비에 걸리게 되면 해당 장르의 위원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12명의 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한분 한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직접 내가 들어가서 직접 심사를 하면서 하시겠다는 분은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직접 하면서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의지표현이라고 저는 봐요. 또,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정병국 위원장 :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역으로 그런 오해를 줄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옳고 이진 그르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말씀해 주세요.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께서서는 위원의 전담심의제 참여를 처음부터 반대하셨고요. 10월에 제가 전화통화를 밤에 1시간, 그 다음날 1시간 대면을 해서 뵈었을 때도 명확하게 전담심의제 위원 참여를 반대하셨습니다. 그 사유도 개인적으로 여쭙봤고요. 그 당시 의견충돌로 인해서 저는 심적 고통을 겪고 지금까지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는데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의 본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발언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중립적인 관점에서 균형 잡힌 시각에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 다른 위원들 의견을 들으시고 진행을 중립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의결심의회가 불가해서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의견을 반대 논리로 계속 말씀하신다는 뉘앙스로 들려요. 그래서 다른 위원들의 말씀을 듣고 위원장님께서 전제가 본인의 확고한 편견을 갖고 그런 의지를 예전부터 말씀하셨고 그런 취지의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중대 사안을 진행할 때는 중립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제 의견은 우리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하게 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의견을 이 회의를 하면서 말씀드릴 적은 없고요. 지금 여기 회의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보고 있고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다만 지금 회의가 진행이 안 되니까 진행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한 부분이라도 제가 어느 쪽에 경도가 되었거나 제 의견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소신이 반영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확실하게 제 소신이 있어요. 제 소신 얘기는 여기에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데 조금이라도 어느 쪽에 치우쳤다고 하면 그것을 지적해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 자체를 재단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이 안건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이것은 표결로 갈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사무처에 질문을 드립니다. 26쪽에 법률자문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상임위원의 법적 지위’ 라고 해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 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해충돌방지법이 언제 제정된 것일까요? 사무처에 질문을 드립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성기숙 위원 : 2019년이죠?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2022년이요.

성기숙 위원 : 그렇다면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것에 가장 상위법이자 모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문화예술포진법이죠, 1973년에 제정된. 거기에는 위원회 가장 모법이자 상위법인데요. 위원회 권한으로 심의·의결은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자문 결과라고 사무처에서 분석 결과를 여기에 명

기해 놓으셨는데요. 그러면 문화예술진흥법에 위원의 심의·의결권한은 고유권한인데요. 1973년에 제정된 모법이자 상위법에 관련된 것은 왜 여기에 적시해 놓지 않고 하위법인 이해충돌방지법을 가지고, 하위법이라는 개념은 맞지 않겠습니까만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을 여기에 명시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진흥법, 1973년에 제정된 위원의 심의·의결 고유권한은 그 어떤 것보다 앞설 수가 없겠죠. 말하자면 헌법이죠. 그것을 간과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추후에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많은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의결을 재촉하시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법조인 다수로부터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진흥법, 73년에 제정된 것에 위원회 심의·의결 권한은 예컨대 국회의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권한을 갖는 것과 똑같이 의원으로서의 고유권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사자가 아닌 같은 위원으로부터 의결권을 배제 받거나 침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했을 때는 권리침해 내지는 강요법에 해당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모두에 사무처에서 법률자문을 들은 것과 지금 성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고요.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것은 성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려고 하면,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신다고 하면 추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성기숙 위원님이 이것을 표결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요. 그 의견을 주신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하시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제 이야기는 표결을 할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25쪽을 보면 제1안이라고 해 놓은 것의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전체회의 안전에 대한 심의·의결권은 위원회 고유권한이므로 참여가 필요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현 규정을 바꿔야 되는 문제입니다. 현 규정을 변경해야 하는 부담과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 규정이라고 함은 1973년에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한 위원의 고유권한인 심의·의결권을 여기에서, 이 규정을 바꾼다고 하면 위원회 전담심의제만이 아니라 위원회의 모든 다른 사안들에서 의결·표결권도 분리해서 가야 된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1973년 모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이것을 과연 해야 될 것인가가 사회적으로 또 법조계로부터 비판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결권을 행사해서 표결로 갈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표결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표결하지 말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는데 그냥 가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기숙 위원 :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비롯해서요. 심의와 의결인데요. 아까 국가유산청도 한번도 심의와 의결을 분리해서 가본 적도 없고 그것은 매우 기본이자 상식이기 때문에 심의·의결이라는 것을 분리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도 그래요. 그렇다면 예컨대 제가 무용 분야를 이렇게 심의했습니다. 3년치와 5년치 자료를 다 분석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할 겁니다. 그래도 문제 제기가 왔어요. 그러면 저는 심의만 하고 의결을 안 한다고 치면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부터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미학적 가치 판단이든 예산 문제든 행정적 측면이든 이것에 대해 무용 분야 전문가도 아닌 타 분야의 위원님들이 과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과 명분과 기준과 무용에 대한 전문적인 미학적 가치판단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는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장 : 반대하시는 위원님들도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지금 성기숙 위원님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무처에서 법률자문을 받은 부분들은 26쪽 자문결과 부분을 보시고요. 이런 것들을 근거로 했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

러지도 못하고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위원회의 입장 정리를 하나로 해야 지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그냥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성기숙 위원 : 제 설명은 모범이자 가장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의 위원 고유권한으로 심의하는 것을 침해하는 게 정당하냐는 말씀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률적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고 법률자문 결과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없나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마지막으로 의결로 가신다고 하면,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기초해서 위원으로서 고유권한이 방해를 받거나 배제가 되거나 심의·의결권에서 배제가 되거나 참여를 못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쟁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법조인들한테 검토를 받았는데요. 이것은 모범에 규명되어 있기 때문에 타자로부터, 위원님들이 잘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에 대한 고유권한을 의결하지 못하도록, 심의·의결에 대한 고유권한을 하지 못하도록 했을 때는 권리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 제기를 사회의 국민들한테도 할 것이고요. 법과 관련해서도 할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의결을 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위원님들이 저에 대한 고유한 권리를 침해할 권한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한 사람과 같은 저의 고유한 권한인데 심의·의결에서 심의만 하고 의결에서 빠지라는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정병국 위원장 :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성기숙 위원 : 다른 위원님들이 결정합니까? 특히나 장르 위원님도 아니고 문화일반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정병국 위원장 : 위원님.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중립적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정병국 위원장 : 위원님, 위원회가 합의제고 결론이 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생각에 차이가 있는데 내 의견만 주장하실 수는 없잖아요.

성기숙 위원 : 아니요.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문화연대와 언론, 그다음에 어제 보내왔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 노동조합에서 저한테 10쪽에 달하는 문건을 보내왔거든요. 제가 새벽 4시에 그것을 수신했습니다. 정독은 다 못 했지만 10쪽에 달하는 거였습니다. 전담심의제 관련 내용도 있고 제가 2024년 7월 31일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고 3개월 남짓 위원회 활동을 했는데요. 제가 기존에 활동했던 2023년 기고문, 언론 인터뷰까지 노조에서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우리가 회의한 것 중에 여러분들, 여기 위원으로 계신 분들의 성함도 있고요. 위원님들이 언급하신 내용도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제가 법령에 의거해서 고유한, 직무수행을 성실히 이행했을 뿐인데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데요. 언론에도 그렇고 문화연대도 그렇고 굉장히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허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연대에도 제가 말을 했고요. 거기에는 배은주 위원님, 왕치선 위원님, 성기숙 제 이름이 적시돼서 성명서가 돌아다니고 있고 제가 문화연대 대표님과도 말을 했어요. “사실관계 확인도 안 되었는데 우리 이름이 거론

되면 정권이 바뀌면 그대로 우리가 블랙리스트인 것 아니냐?”, “블랙리스트를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대한민국 진보 진영의 NGO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 “사실관계를 우리하고 소통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전제가 아니냐?” 라고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언론취재도 제가 인터뷰를 했고요.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책임을 물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조에서 저한테 10쪽에 달하는 문건이 온 것에도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느꼈고요. 정독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성함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나중에 법적인 문제까지 갔을 때는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응을 나름대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제가 하루에 2~3시간을 자고 병원에 다니면서 직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치 사찰을 당한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위원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줌으로라도 좋습니다. 제가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문화예술위원회가 과연 향후에 어떻게 가야될지 위상 재정립, 정체성, 성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위원들의 역할과 기능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자문해 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저는 대응을 할 겁니다. 언론, 문화연대, 사무처에서 불합리한 게 있으면 할 것이고요. 노조에도, 물론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건 좋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모든 것은 발전을 향해 가는 긍정적인 진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달게 수용을 하고 대처를 해 나갈 예정인데요. 이런 부분을 저는 사회에 묻겠습니다. 국민들한테 물을 겁니다. 제가 3개월 동안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한 것이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그다음에 전담심의를 지금 실행하지도 않았습니까. 공정성 운운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위원의 인격권, 위원의 권리보장은 어디에서 받는 겁니까? 어디에 호소를 합니까? 언론에 호소하고 국민에게 호소하고 사회에 호소할 겁니다. 전담심의제 의결권을 가지고 지금 3번째 회의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TF 회의에서도 했는데요. 서승미 위원님은 문건까지 가지고 와서 지난번 TF 회의 때 반대논리를 폈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수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전담심의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돼서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문화연대나 또는 노조에서 피력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다 가서 유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관계를 앞으로 명명백백하게 따져 물을 것입니다. 제 직을 걸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처하고의 관계성이나 위원장님이 저한테 위계에 의한, 저는 죄송합니다만 이런 단어를 쓰겠습니다. 갑질을 당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부적절한, 그동안에 불합리하게 겪었던 것들을..... 정말로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 병원진단서를 들고 저는 대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연대나 노조에서 저한테 10장짜리로 온 것에는 위원님들의 성함과 위원님들의 발언이 다 적시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어떤 단계로 향해 나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들을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사회에 국민에게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을 거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고유하게 갖는 권한과 권리를 저는 침해 받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 권리를 위원님들께서 침해해서 위계를 통해서 배제한다고 하면 저는 법적으로 대응할 거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성기숙 위원님이 그동안 소신껏 의견을 주셨고 그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셨는가에 대해서 저희들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생각의 차이는 서로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 위원회를 운영해 오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표결을 한 적이 없었고 이 사안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TF 팀을 통해서 합의안을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TF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요. 그동안 몇 차례 개별적으로도 같이 의견수렴을 해 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았고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오죽하면 장관님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상황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도 한계 같은 것을 느낍니다만,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정을 하고 여기에서 우리 위원회가 멈출 수는 없기 때문

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표결을 하는데 지금 문자로, 스마트폰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너무 독선적이고 편의주의적으로 진행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표결의 방식도 원래 이렇게 문자로 합니까?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거수로 할까요?

성기숙 위원 : 아니, 그 방법을 위원들한테 묻는 과정. 저는 표결에 반대는 합니다만, 저는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일방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너무 일방적이라고 그냥 규정짓지 마시고요.

성기숙 위원 : 이해가 안 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제가 그것을 위원님들께 물어볼게요. 우리 위원님들 표결 방식을 온라인으로.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정병국 위원장 :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성기숙 위원 : 표결을 했을 때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사실 순서로 보면 위원들께 표결을 하는 것에 대한 의견과 토의가 있어야 맞는 거라고 봐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성기숙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정병국 위원장 :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견을 달라고요.

성기숙 위원 : 너무 일방적이세요. 제가 한 두 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옛날 일이 떠올라서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게 일방적이라고 하면.

성기숙 위원 : 일방적이세요.

정병국 위원장 : 알겠습니다. 더 일방적으로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이 사안을 표결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표결하기를 바라시나요? 지금 저희가 준비한 것은 온라인 스마트폰을 통해서 표결하려고 준비를 해 놓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또 다른 방법론을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표결의 방식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결을 하는 것에 대한 토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병국 위원장 : 여태까지 토의를 했고요.

성기숙 위원 : 표결을 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병국 위원장 : 위원님, 여태까지 위원님들 의견을 들었고요.

성기숙 위원 :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고 표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과 토의가 없지 않았습니까?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위원님들, 성기숙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것을 표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표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찬반을 물을까요?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을 하되 지금 저희가 준비해놓은 온라인 무기명으로.

구문모 위원 : 잠깐만요. 제 생각에는 지금 표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일단 이런 건 어떠세요? 여태까지 쪽 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말로 하니깐 까먹기도 하고 정리도 안 될 수도 있는데 의견을 한번 각각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한번 받아 보시고요. 짧은 시간 내예요. 하루 정도 의견을 받고 보시고 그것을 요약해서 정리를 한번 하시고요. 어쩔 수 없이 표결에 이를 수 없다고 결론을 내시면 표결하는 방법은 어떠세요?

정병국 위원장 : 위원님 의견도 좋으신데요. 그동안 이것을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가 들어봤고요. 그리고 TF팀을 통해서 꼭 협의를 해 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의 말씀도 드렸고요. 그런데 TF팀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표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성기숙 위원 : 제가 구문모 위원님

정병국 위원장 : 잠깐만요. 제가 발언권을 드릴게요.

성기숙 위원 : 아니요. 이 부분은 중요해서요. 사무처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26쪽에 법률자문을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법률자문을 받으신 로펌과 변호사를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해충돌방지법 2019년 것을 주로 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법에 해당하는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 1973년에 명기되어있는 문화예술위원회 권한으로서 심의·의결. 문화예술진흥법, 모법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법률자문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문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시간을 가지고 재논의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법률검토를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장 : 저희는 충분히 했고요. 그리고 성기숙 위원님 의견을 다 들었잖아요. 다 들었고 위원회 사무처에서 법률검토를 한 것은 이미 서류로 해서 위원님들께 다 드렸고요. 성기숙 위원님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서 정리하신 것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다 들어주셨어요. 그러니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여서

던 안 받아들이시던 성 위원님께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계속 이것을 지체할 수는 없어요.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사무처에 질문을 한 거니까요.

정병국 위원장 : 사무처에서는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아니요. 사무처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전체회의지 않습니까? 사무처에서 제 이야기, 이해 충돌방지법 2019년도 것을 적용했는데 모법에 해당하는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의 고유권한인 ‘심의·의결’ 이 법에 적용해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무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우려들을 포함해서 다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정 소송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저의 발언권을 자르지 마시고요. 제가 사무처에 물은 겁니다.

정병국 위원장 : 지금 회의 진행은 제가 합니다.

성기숙 위원 : 사무처에 물은 겁니다. 사무처의 답변을 듣고.

정병국 위원장 : 사무처에 묻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께서 월권을 하고 계십니다.

정병국 위원장 : 월권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사무처가 본 회의장에 들어와서 문건으로 준 것 이외에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위원회를 진행하는 진행자로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무처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나요? 위원장님이 그것을 생략하고 가는 것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제시해주세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무처에 궁금한 것을 질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병국 위원장 :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성기숙 위원 : 그러면 해 주십시오. 사무처에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요청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서류상으로 한 것 이상 사무처에서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이 아니고요. 사무처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 회의자료는 제가 요구를 해서 제가 받은 겁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요.

성기숙 위원 : 이 회의 자리에서 제가 궁금한 것을 질문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답변을 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 자리에서 당장 표결하는데 “어느 로펌의 자문을 받았는지?” 그 자체가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기숙 위원 : 그러면 로펌은 생략하시고요. 이해충돌방지법 2019년도 것을 적용했으니까 모법에 해당하는 1973년 문화예술진흥법에 명시된 위원회 고유권한인 ‘심의·의결’ 그 문구를 토대로, 아니 이견 며칠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재검토를 요청한다는 것이 그리 잘못되었습니까?

정병국 위원장 : 위원님, 지금 먼저 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그게 모법이 아니고요. 다만, 법률상 “소급 적용할 수 없다.” 라는 것은 있습니다만, 그게 나중에 제정된 법이라고 해서 먼저 제정된 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논리에서는 신법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사들에 따라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이기에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한다는 근거도, 지금 이 자리에서 표결하고자 하는 안건에, 우리 위원님들이 표결하는데 전혀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회의를 중립적으로 진행해 주세요.

정병국 위원장 : 제 말씀을 좀 들으세요.

성기숙 위원 : 회의를 중립적으로 진행해 주세요.

정병국 위원장 : 중립적으로 하는 겁니다.

성기숙 위원 : 왜 질문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답변을 못 하게 하십니까?

정병국 위원장 : 제가 이 답변을 전부 다 사무처에 해서 정리하고 위원님들께 드린 것이 이 자료입니다.

성기숙 위원 : 이 자료를 토대로 제가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사무처가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줘서 이게 가결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기숙 위원 : 그건 위원장님 개인의 판단이시고요.

정병국 위원장 :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성기숙 위원 : 개인 판단을 개입시키지 마십시오.

정병국 위원장 :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으로서 제 권한을 다 해서 이것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표결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한 온라인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사무처의 답변을 듣고서 진행하십시오. 매우 중요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사무처가 지금 판단할 근거도 없고요. 지금 여기에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한테 당장 물어보겠습니다만,

성기숙 위원 : 제가 근거가 없으니까 재검토를 2~3일이라도 하시고요.

정병국 위원장 : 그 부분까지도 검토한 결과가 이 결과입니다.

성기숙 위원 : 아니죠. 검토를 하시고요. 제가 요청드리니까요.

정병국 위원장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구문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3일 후에 진행을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위원이 이야기하고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독단적으로 판단하시고 사무처의 이야기를 왜 못 듣게 합니까?

정병국 위원장 : 위원님들한테 여쭙보는 겁니다.

성기숙 위원 : 독단적으로 진행하지 마십시오. 회의를 독단적으로 진행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정병국 위원장 : 우리 위원님들께 여쭙보겠습니다. 이것을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구문모 위원님은 아까 연기하자고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 계신가요? 왕치선 위원님도 계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왕치선 위원 : 저도 이 상황이 정상적인 회의진행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정병국 위원장 : 정상적이지 않다는 건 어떤 측면이죠?

왕치선 위원 : 그것은 다들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공통으로 느끼실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무리하게 그것도 무기명으로 의결을 표결한다고 하면 부작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지금 세 분은 지금 당장 표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이것은 계속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게 또 결정이 안 되면 달리 또 어떤 회의를 소집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의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기숙 위원 : 민주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단어를 안 쓰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정병국 위원장 : 제가 비민주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민주적입니까?

성기숙 위원 : 저한테 그동안 했던 행태가 다 비민주적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다 공개를 할 겁니다.

구문모 위원 : 위원장님, 사실 문자 투표를 하는 건 그렇게 다급한 것은 아닙니다. 하루 지나도 다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려운 것은 아닌데요. 만약 그것을 못 하시겠다고 하면 아까 3명의 연기하자는 위원들 말고 다른 분들이 오늘 꼭 해야만 되는 것을 하나씩 의견을 주셔서 하세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연기를 하자는 3인 위원님들 말고 말씀을 안 하신 분들은 다 표결을 하자고 하시는 분들인가요? 연기하자는 의견이 있는 건가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세요. 말씀을 해 주셔야죠.

배은주 위원 : 저도 구문모 위원님처럼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면 지금 많이 격양되어 있고 무리하게 하는 건..... 한번 더 기회를.

정병국 위원장 : 한번 더 기회를 준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을까요?

배은주 위원 : 오늘 스마트폰으로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 방식이면 아까 구문모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도 언제든지 사인을 서명으로 하는 방식일 텐데요. 그런 방식을 한번 더 사용하면 어떨까?

정병국 위원장 :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이 문제가 오늘 처음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안타깝고 이것을 정리하고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위원님들 간에 갈등소지만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더 컸다고 해서 다른 상황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을 하셔야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제가 일을 어떻게 합니까?

구문모 위원 : 위원장님 맞습니다. 그냥 침묵만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꼭 의결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그냥 침묵만 하지 마세요.

정병국 위원장 : 의결을 오늘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 의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수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장에 몇 분이 손을 드셨나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지금 서울에서는 두 분이 손을 드셨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온라인상에서는요? 이훈경 위원님.

정갑영 위원 : 회의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나가봐야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하는 것도 좋고 다음에 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러면 다음에 한다면 언제가 마지막이고, 그러니까 시간을 정하세요. 언제까지는 분명히 해야 된다. 언제는 뭘 하고 언제를 뭘 해서, 이게 필요한 시간이 언제인데 언제까지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타임스케줄을 정해놓고 말씀을 하시죠.

성기숙 위원 : 정갑영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요청드린 것은 사무처에서 법률검토를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고유권한으로서 ‘심의·의결’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빠른 시일, 언제까지고 그 결과가 나와서 다른 문제를 파생하면 이것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성기숙 위원 : 사무처에서 답을 해 주셔야죠. 정갑영 위원님, 그것은 사무처의 로드맵입니다. 사무처가 고심을 해 봐야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무처가 절대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정갑영 위원 : 생산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빠른 시일 내라는 것은 언제?

성기숙 위원 :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할까요?

정갑영 위원 : 하시죠.

성기숙 위원 : 다음 주 중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주부터 전담심의회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끝나는 일정이 12월 24일. 제가 맡은 건 12월 24일에 끝납니다, 심의는요. 그러면 사실 12월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외부로, 일반에게 심사결과가 공개가 되는 시점 이전에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절대시간을 두고 다룰 일이 아닙니다. 심의가 다 끝나고요.

정병국 위원장 : 심의일정은 사무처한테, 이것은 사실 관계고 팩트고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이것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죠.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예. 오늘부터 공연예술창작산실 심의가 진행되었고요. 그다음에 창작주체가 있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차, 2차 인터뷰까지 있는 사업들이 있지만 빨리 끝나는 사업들은 12월 중순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일찍 끝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나와 되는 상황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 : 지금 4인이 오늘 표결하자는 것이고 3인이 연기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홍성태 위원 : 그동안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다른 의견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오늘 또 이렇게 격양되었다고 해서 서너 분이 다음에 하자고 하시니까 다음 주에 해도 된다고 하면 그 기회를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다음 주 주말까지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5일날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태 위원 : 예.

정병국 위원장 : 예. 우리가 오늘 충분히 의견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해 드렸고요. 그러니까 5일 의견들을 주시면 그 결과를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의결입니다. 그러면 됐나요?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서면 의결이 아니고요. 제가 요청한 법률검토를 저는 좀 듣고 싶습니다. 그것을 듣고 저도 그것이 타당하다면 제 의견도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일단 그것은 드리겠는데요. 서면 의결을 5일날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12월 5일 서면 의결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안전번호 제1084호 문화예술진흥기금 완전위탁형 제도 도입입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28페이지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연기금투자플 완전위탁형 제도 도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의결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기관은 기관 내에 위원장님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산운용위원회를 두고 자산운용 부서로 기획조정팀과 그 안에 자산운용역을 두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 방식을 자체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에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기금투자플 완전위탁형 제도로 전환하고자 하고 이를 위원님들께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제도 도입 근거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안에 있는 기금들의 운용 전문성 확보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연기금투자플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2022년부터 전면 도입 정책에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1조 원 미만의 52개 기금 중에서 36개 기금이 연기금투자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도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기금운용평가에서 문예진흥기금 자산운용체계를 정비하고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받았고 이에 연기금투자플로 완전 위탁하고자 합니다.

현재 2025년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 기금은 문예기금을 비롯해서 4개 기금이고 이에 따라서 그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의 연기금투자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기금투자플은 기획재정부에서 관리감독하고 있고 일정 기준에 따라서 주간운용사를 선정해서 해당 운용사가 연기금투자플이라는 사업을 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연기금투자플을 운용하는 전담 운용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해당 투자플에 53조 4,631억 원이 예탁되어 있고, 만약 문화예술위원회가 연기금투자플로 이관이 되게 된다면 기금운용의 안정성, 수익성, 투명성 제고를 기대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문예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관련 법령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정해지는 기준에 따라서 자산운용부서인 기획조정팀에서 자산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경력이 있는 기금운용역을 채용해서 현재 기금운용을 하고 있지만 단 1명이고요. 그에 비해서 거대 자산운용사와의 정보 격차나 투자 규모에 따른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4)번의 연기금투자플 이관 계획입니다.

연기금투자플에서 관리할 대상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에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예기금은 문예기금 그 자체가 있고 건축물미술작품설치대체출연금(건미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관대상은 문예기금에 있는 현재 현금화 할 수 있는 최대치인 590억 원. 예상치입니다. 또 건미출연금 612억 원입니다. 참고로 건미출연금은 사용목적이 정해져서 일반적인 문예기금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시면 12월 초에 자산운용위원회를 열고 이를 통해서 전담주간운용사를 선정하고 12월 중에 그 결과를 문체부와 기재부에 통보해서 1월 중에는 연기금투자플로 이관해서 운용

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은 보고를 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문예진흥기금하고 건미출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운용위원회가 있고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고 운용합니다만 이것을 담당하는 우리 직원은 1명밖에 없습니다. 이 위원회는 1년에 4차례 정도 회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돈을 관리하는데 한 사람이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와서 몇 년 동안 전체적으로 기금운용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썩 성과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는, 또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요. 그래서 정부에 위탁 관리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운용해서 돈을 버는 기관도 아닌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기금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운용위원회와 협의를 했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성기숙 위원 : 이 부분에 장점과 약점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되셨을까요?

정병국 위원장 : 예. 제가 우리 자산운용위원회 하고 얘기를 했을 때 한 사람이 이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정보량도 그렇고 어렵다는 얘기고요. 자기들이 자문을 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운용을 잘 해서 많은 수익을 냈다고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면 좋을 텐데 지금 성적도 좋은 성적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정부에다가 위탁을 해서 정부가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관리를 하는 건 아니고 정부가 지정한 운용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게 되면 기본적인 것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날 일은 없는 상황에서 운용을 한다는 게 장점입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경험상 기금을 운용하면서 큰 수익을 냈거나 하는 경험이 있다면 그 기회를 상실한다고 했을 텐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산운용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셔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경영기획본부장이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29페이지를 보시면 기존에는 문예진흥기금뿐만 아니라 정부가 기금들을 기금 관리주체에서 직접 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2022년도부터 기재부에서 연기금투자펀드이라는 작은 기금들. 예를 들어 국민연금처럼 큰 기금들은 지금도 각자 알아서 운용을 합니다. 운용인력도 많고요. 그런데 규모가 크지 않은 기금들 같은 경우는 운용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연기금투자펀드라는 것을 기재부에서 만들었고요. 그 연기금투자펀드가 운용이 되다가 연기금투자펀드에 완전위탁을 해서 운용의 부담을 덜게 해 주는 제도를 2022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전면도입이 되었고 몇 몇 기금이 초반에 참여를 시작하다가 지금 현재 정부산하 52개 기금 중 36개 기금이 이미 참여 중입니다. 그리고 만약 위원님들이 오늘 의결해 주신다면 내년부터 저희도 참여를 하고 올해 저희뿐만 아니라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기금이 영화기금, 복권기금, 군인복지기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도 그렇고 저희 운용에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현재 장점도 많은 상황이라서 의결해 주시면 들어가고자 합니다. 당연히 기금 자체는 그대로 존립하는 것이고 기금의 운용만 투자펀드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쓰거나 하는 것에 방해 요소는 전혀 없고요. 똑같은데 돈을 굴리는데만 정부가 위임해서 보장하는 그런 기관에 위탁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보고 사항

정병국 위원장 :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안은 2024년 국정감사 결과에 대해 김성범 기획조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페이지 33페이지 2024년 국정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과 24일에 개최된 우리 기관 국정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국정감사는 문체위 위원 16명 그리고 문체부와 21개 공공기관이 현장에서 수검을 받았습니다. 우리 기관에는 총 10개의 질의가 들어왔고 그중에 7건은 구두질의 4건은 서면질의였습니다. 그중에 1건은 구두와 서면 둘 다 들어왔기 때문에 총 10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용들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재원 위원은 예술과 기술 융합지원.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서면으로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이것을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미 언론에 난 것도 있고 직접 실황을 보신 분들은 보셨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요약해 놓은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의문이 들거나 의견을 주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숙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성기숙 위원 : 이것을 정리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저도 국감 때 위원장님 노고가 크셨고 시간이 되는 한 경청하고 시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치사항과 향후 계획들이 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무처에서 아마 이런 계획과 조치사항을 준비해서 명시해 놓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사무처에서 추진계획이라고 문건화하기 전에 위원들하고 소통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회 질의나 요구사항에 대해서 사무처 생각도 있지만 각 위원들의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생략되고 사무처의 일방적인 조치사항과 추진계획이 문건에 적시되어 회의자료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직무활동 범위가 축소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 국감에서 문예위에 질의하신 위원들을 정리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10월 25일 저희 전체회의 시작 3분 전에 송시경 사무처장께서 저한테 문건 하나를 줬습니다. ‘유인촌 장관 화이트 리스트’ 라는 제목이었고요. 내용은 임오경 의원께서 2024년 10월 25일 새벽 2시경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상황은 보지 못하고 나중에 유튜브를 돌려서 봤는데요. 임오경 의원이 지적한 것은 문예위를 적시한 것은 아닙니다. 유인촌 장관을 지지선언한 무용계 인사들을 언급하며 한 말씀하면서 지나가셨고 장관께서도 “그것은 우려다.” 이렇게 러프하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인촌 장관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임오경 의원이 문예위는 언급도 안 했고요. 특히나 성기숙 위원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2페이지짜리 문건에다가 더 놀랍고 경악스러운 것은 문예위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유인촌 장관 152명의 지지선언’ 이것은 무용계의 대

표성 있는 무용가가 70~80%라고 하면 어렵잡아 추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지선언이라고 하면 대통령지지선언, 박양우 장관 때도 지지선언이 있었고요. 대한민국에는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지선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지지선언을 한 것을 갖다가 152명 중에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심사한 일부 명단을 도표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문예위에서 별도 문건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저도 들어가 있었고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심의를 했으니깐요. 그런데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심사표도 잘못된 것이 예경에서 1차 2차 심의가 있었고요. 저희는 1차 심사만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심의를 하고 2차는 참여도 안 했고요. 지원액과 지원단체 결정은 모두 2차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1차와 2차의 심사위원을 한꺼번에 발표하는 바람에 저희들까지 사실은 거기에 물려 들어가서 억울하게 된 겁니다. 그 결정액과 결정 지원단체는 저희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경 심사한 명단에서 제가 충원 명단이라고 해서 11명을 위원회에 이번에 쫓았습니다. 충원 명단 11명을, 예경에서 심사한 명단과 제가 드린 충원 명단에서 노란 줄로 그어서 3명을 표로 만들어서 저한테 전달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것을 명백한 블랙리스트라고 간주하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한 달 이상이 지났죠. 제가 사무처와 위원장님께 이 문건의 전달 경위 “공문으로 전달이 되었는가?”, “공문의 유무를 포함해서 공식 문건 전달 경위” 그리고 이런 공식 문건으로 왔다면 확인을 요청드렸고요. 그러면 문예위에서 예경 것과 제가 전달한 충원 명단에서 노란 줄로 3명을 쫓 그어서 저한테 전달했는데요. 문예위에서 이 문건을 작성한 배경, 문예위에서 이 문건을 작성한 지시자, 문예위에서 이 문건을 작성한 실행자 부분에 대해서 확인 요청을 드렸는데 일부 카톡으로 답변은 주셨습시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공식화 합니다. 이 부분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명백한 블랙리스트라고 간주를 하고요. 저의 위원회 활동에 엄청난 위압감과 심리적 위축감을 주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병원을 다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위계에 의한 갑질, 제가 느끼는 갑질입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사실관계와 다른 언론, 국감, 문화연대, 노조에서 집중적으로 저한테 비판과 비난과 공격을 합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겠죠.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해명합니다. 지금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문예위가, 대한민국 문예위가 1973년 순수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진흥원으로 발족을 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제가 OT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문화예술위원회가 정말 정상적으로 토대를 잘 닦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열의와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보장된 직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건 바이 건으로 공론화를 검토할 것입니다, 이 부분까지도요.

정병국 위원장 : 예.

성기숙 위원 :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중압감 있고 책임감 있는, 문예위 전달심회는 참여하지 않고 의결에만 참여한다. 남의 분야까지 의결을 한다. 심의는 참여하지 않고요. 자기 분야는 참여하지 않고 의결에 참여하신다고 했고 이훈경 위원님이 무용 분야만 공정성을 위해서 모든 자료를, 심사자료뿐만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현장 예술가들이 요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2025년 정시공모에서 대한민국공연예술제가 축제로 전환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정병국 위원장 : 위원님 죄송한데 회의 진행 상 보고안건에 대해서만 의견을 주세요.

성기숙 위원 : 아니요.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무용계에 핫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전협의를.

정병국 위원장 : 혼자 회의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위원님들의 시간도 있는데 너무 하시잖아요.

성기숙 위원 : 이 말씀만 드릴게요. 향후 겨울에 협회 선거까지 연류가 되어서 관권선거라는 오해까지

받고 있는 상황임을 위원님들께, 왜냐하면 무용계 현장 여론을 제가 전달해 드려야 위원님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실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 심의 결과에 대해서 심의·의결권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도 더불어서 드리고요. 지금 제가 당하는 고초와.

정병국 위원장 : 이제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성기숙 위원 : 예,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문화예술가들한테 지원하는 기금, 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의 운영기금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받는 수당, 사무처도 전부 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이 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정리해 주시죠.

성기숙 위원 : 그러면 노조를 포함해서 저희는 이런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잘 써야 된다는 의무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 과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또 다른 블랙리스트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심리적으로 위압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립니다. 순차적으로 제가 공론화를 할 예정으로 있고 차근 차근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성기숙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건에 대해서는 제가 사무처장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전날 새벽 2시에 국정감사 중에 나온 얘기들을 정리했고 그것과 더불어서 시중에서 떠도는 얘기들을 요약하는 과정 속에서 자료로 만들어서, 사무처의 의무가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근거 자료나 이런 걸 제공해 드리는 게 의무라고 판단을 해서, 만약 그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모든 위원들한테 드렸을 텐데 당사자 위원님께만 드렸다는 겁니다. 저는 보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성기숙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어떤 자료인지를 봤는데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무처장이 성기숙 위원님께 문서를..... 문서도 아니고 요약본입니다. 요약본으로 정리하게 된 경위를 저한테 설명을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정된 안은 아니구요. 사무처에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조치사항까지 포함해서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이것조차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장르도 다 다르고 질문한 내용도 다 다른데 의견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안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바로 이 자리에서 드린 것도 아니고 최소한 7일 전에는 이것이, 제가 알기로 이런 사안은 7일 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공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고 의결을 여쭙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결과 보고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무처에서 나름대로 하느라 하는데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다거나 뭔가를 보완하거나 고쳐야 될 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보완하거나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공식 문건을 만들어서 블랙리스트로 적시해서 위원한테 문건을 전달합니까?

정병국 위원장 : 위원님, 블랙리스트로 지적을 했다면 위원님께 그걸 왜 드리겠습니까?

성기숙 위원 :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를.

정병국 위원장 : 그래서 위원님께서 향후 여기저기에서, 언론이든 뭐든 추가로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대응하시라고 참고자료로 드린 것이죠. 긍정적으로 봐주세요. 우리가 성기숙 위원님을 그런 쪽으로 몰이

유가 없죠.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그것은 공론화 단계에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참고를 하라고 주셨는데 문화연대에서 성명서를 다 돌리고 사무처에서도 본부장님과 팀장님들, 문화연대에서 문건을 돌린 것. 우리 배은주 위원님, 왕치선 위원님, 성기숙 이라고 이름이 적시돼서 문화연대에서 돌리고 있는 문건. 사무처 본부장님과 팀장님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한테 정보와 공유를 하지 지금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겁니다. 국감에서는 문예위는 적시도 안 하고 성기숙 이름도 얘기를 안 했는데요.

정병국 위원장 : 국감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성기숙 위원 : 친절하게 이런 문건을 노란 줄까지 쳐서 제가 추가 명단을 드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주셨고요. 문화연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실명이 3명이나 거론되었고요. 이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건이고요. 정권이 바뀌면 바로 제가 블랙리스트가 됩니다. 문화연대 대표님한테 이 말씀도 드렸어요. 공감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위원님 이제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성기숙 위원 : 사무처에서 나간 이야기들이 사실과 다른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를 할 것이고요.

정병국 위원장 : 예, 공론화하시고요. 그러니까 회의는 좀 진행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성기숙 위원 : 위원님들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사회적인 관심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역할이 뭐고 위원님들의 역할은 과연 뭐냐? 전담심의에는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안 들어간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죠.

정병국 위원장 : 여기 다른 위원님들이 성기숙 위원님의 혼계를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기숙 위원 : 아니죠. 국감 얘기가 나와서 더불어 말씀드린 겁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은 여기저기에서 나올 수 있는 의견들이고요. 이걸 국감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해 드린 것이고요.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국감에서 나온 자료는.

정병국 위원장 :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저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성기숙 위원 : 사무처에 확인했습니다. 뒤의 문건 2장은 사무처에서 작성했다고 제가 확인을 받았습시다.

정병국 위원장 : 작성했고요. 그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했느냐 하면, 각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런저런 자료 요청을 할 때 이런 취지로 질의를 하려고 했을 때 우리 사무처의 직원들이 해당

의원의 방에 가서 보좌관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전부 다 톤 다운시킨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정병국 위원장 :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그 부분은 사실관계가.

정병국 위원장 : 아니 제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성기숙 위원 : 사실관계가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십니다. 여의도에 저도 확인할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시면 나중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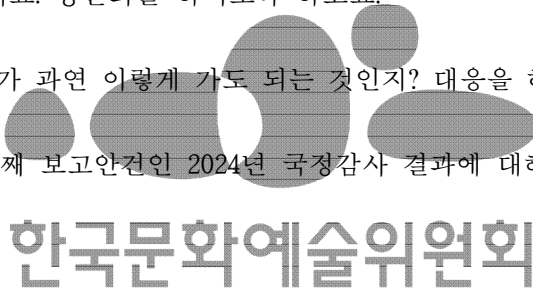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 그런 우려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드렸다고 제가 했고요. 이 자리에서 사무처장한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까요?

성기숙 위원 : 뒤의 문건은 사무처에서. 아니 제가 공론화를 검토한다니까요.

정병국 위원장 : 공론화를 하세요. 공론화를 하시도록 하고요.

성기숙 위원 : 문화예술위원회가 과연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지? 대응을 하시죠.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첫 번째 보고안건인 2024년 국정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두 번째 보고안건은 2024년 경영전략소위원회 8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정감영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위원장님, 지금 김진각 위원님께서도 시간상 이석을 하셔야 해서 세 번째 보고안건인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부터 보고를 들으시는 게 어떨까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지금 이 회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두 분의 위원님께서 잠시 자리를 뜨신 관계로 세 번째 보고안건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 7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김진각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각 위원 : 이번에 회의안건이 총 3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민간후원활성화지원 신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3가지 안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안건과 두 번째 안건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안건이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요.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 정부에서 내년도 민간후원 쪽이 많이 약하다고 판단해서 40억 원 정도를 새로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40억 원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이냐?”, “후원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라는

이슈가 생겼고요. 지금 사무처에서 제시한 안은 3가지 정도가 제시되었습니다.

42쪽을 보시면 첫 번째가 지역문화재단 중심의 지역확산형으로 예산을 쓴다는 것. 그다음에 기업이 지금 예술상 등을 많이 만들어서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업에 예산 중 일부를 배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인구소멸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과 연계시켜서 민간의 후원을,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3가지 안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이 3가지 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그런데 첫 번째 안 중에 하나는 지역문화재단 중심으로 해서 후원이 활성화되도록, 지역의 후원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기업의 관심이 없으면 어렵다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역에 기업들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술위가 지역문화재단을 독려하는. 사실 지역문화재단이 민간활성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이나 인력이나 조직이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환경부터 만들어 주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종 문화예술상이 있는데 이것에 덧붙여서 내년에 신규로 40억이 지원되는 돈 중에 일부를 기업에 지원해서 예술상의 규모를 키운다거나 새로운 예술상을 만들어 간다는 방안이 괜찮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멸지역을 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기업들이 참여해서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 정책을 발굴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민간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를 만드는데 돈을 쓸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도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구소멸지역에 민간기업들이 과연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들어올 것이냐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지금 다른 부처에서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의 사업을 들여다보면서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우리 김진각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대로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두 번째 보고안건인 경영전략소위원회 8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오늘 특별히 결정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서면으로 여러분들께서 봐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회차에서 의견을 주시도록 하시거나 긴급하게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두 번째 보고안건에 대해서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12월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사무처장은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일정 보고)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12월 위원회 전체회의는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에서 저한테 10쪽짜리..... 저는 굉장히 위압감을 느끼는 문

건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무처에, 참조로 되어 있었어요. 임주연 본부장님과 김성범 팀장님. 그래서 두 분께, 제가 메일수신을 새벽 4시에 했고 두 분한테 메일을 보낸 게 4시 30분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3가지 요청사항을 드렸거든요. 노동조합 문건에 명기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담심의제 도입과 관련해서 현장 정보와 FGI 추진 현황 및 상세 내용. 두 번째가 전담심의제 TF 1차, 2차 회의의 녹취록 전문. 여기에 서승미 위원님, 김진각 위원님이 문건에 거명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녹취록이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녹취록에서 발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녹취록 전문을 부탁드렸고요. 세 번째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자율운영보장 공동선언문 전문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회, 위원회라고 하면 사측이겠죠. 그리고 노동조합. 그러니까 노사간이죠. 이렇게 되었을 경우 관련 사안에 대한 사측. 저 비상임위원을 전담하는 조력 전담인력 배치 요청을 드렸습니다. 전담인력을 저한테 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고요. 두 번째 요청사항으로는, 제가 이것은 노조위원장님을 10월 회의가 끝나고 서울에서 뵈었을 때, 제가 무용 분야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기간을 연기해 달라고 해서 그 기간을 수락해 줬고요. 그 자리에서 요청한 것에 대해 기한 연장을 해 줬고 제가 노동조합의 위원장님께 저도 노동조합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받지 못한 자료입니다. 제가 필요 요청했느냐 하면, 문예위 노동조합 설립 및 역사. 그다음에 문예위 노동조합 구성원 및 조합원. 간부 명단을 포함해서요. 세 번째 문예위 노동조합 주요 활동과 예산. 그리고 현재의 활동 현황. 그리고 네 번째 사측과 노동조합의 관계설정 및 논의방식. 관련 법령이 뭐가 있는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해서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해야 돼서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노사의 이해를 돕는 자료를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공 요청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2024년 국정감사 결과 보고에서 누락된 ‘유인촌 장관 화이트 리스트’ 라는 문건으로 문예위에서..... 앞의 2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야말로 임오경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고 뒤에는 문예위에서 명백하게 문건을 작성했거든요. 그것은 문예위 간부께서 다 확인을 한 사실이고요. 이 문건에 대해 공식화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요. 제가 또 수신여부와 앞으로 저한테 어떻게 계획을 해서 줄 것인지를 요청드렸는데 지금까지 답신이 없습니다. 이 회의석상에서 3가지를 요청드렸다는 말씀을 확인해 드리고 기록에도 남겨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김효은 노조위원장 : 노동조합은 못 드려요. 제가 드리겠다고 한 적이 없고 노보를 대신 드리겠다고 했고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드렸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노조위원장님 회의가 아직 안 끝났어요.

김효은 노조위원장 : 죄송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여기에서 노조위원장님이 발언할 발언권은 없고요.

성기숙 위원 : 저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싶어서 요청드린 것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알았어요.

성기숙 위원 : 지난번에 요청을 드렸을 때도 노동조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드린 겁니다.

정병국 위원장 : 성기숙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정리를 해 주시고요. 충분히 성기숙 위원님 의견을 들었고요. 그래서 사무처에서는 지금 요청하신 가능한 자료는 조속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노조와 관련해서는 위원장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성기숙 위원님께서 직접 노조위원장께 요구할 것이 있으면 요구를 하시고요.

성기숙 위원 : 그러면 이걸 위원이 직접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정병국 위원장 : 위원장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기숙 위원 : 사무처에서 제가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여쭙본 겁니다.

정병국 위원장 : 위원님, 사무처에서 준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도록 하고 노조가 해야 할 것은 노조와 직접 대화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기숙 위원 : 노조는 저도 평소에 관심이 많았고요. 서로 이해를 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노동조합에 대한 현황을 알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6. 폐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이상으로 제384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19분 회의 종료)

